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76 발의연월일 : 2025. 2. 24.

발 의 자:정일영·김정호·한정애

임광현 · 강유정 · 이학영

정태호 • 박상혁 • 주철현

김문수 · 김영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」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83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